

투자설명서

2021년 10월 13일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금융투자 신한 코스닥 150 상장지수증권 제62호	2,000,000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 코스닥 150 상장지수증권 제62호	200억원

-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1년 10월 13일
- 모집가액 : 금 20,000,000,000 원
- 청약기간 : 2021년 10월 14일
- 납입기일 : 2021년 10월 14일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본 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약정 수익률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지수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지수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5.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6.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8. 본 ETN은 특정 단위 이상으로만 종도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만 거래하실 수 있으며, 본문에 나오는 일부 내용(종도상환 등)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방식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9. 만기 전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종도상환 요청 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종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발행회사는 동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고지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투자자는 본 상장지수증권을 투자하기 위해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예탁금액은 계좌개설증권사 또는 투자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투자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종목명 : 신한금융투자 신한 코스닥 150 상장지수증권 제62호]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목	내용
1) 거래소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거래소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거래소가 모두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외환거래 포함)를 수행하는 날
6) 기초자산 산출기관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각 기관 한국거래소
7)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8)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9) 시장교란사유	i) 거래장애(Trading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한가, 하한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i) 거래소장애(Exchange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ii) 조기폐장(Early Closure) :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일에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 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iv)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10)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1)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항목	내용
12) 발행가액	최초 발행시의 1증권당 지표가치로 해당 상품의 만기까지 불변
13) 지표가치금액	총액 개념으로,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유사 기초지수가격에서 총보수 만큼 차감한 가격.
14) 일일 지표가치 (IV: Indicative Value)	<p>지표가치($IV(T)$) = 지표가치($IV(T-1)$) \times (기초지수종가(T)/기초지수종가($T-1$)) - 총보수</p> <p>*지표가치($IV(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지표가치($IV(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N 1증권당 실질 가치 -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 일할 계산된 총보수, 분배금 등을 누적하여 산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1회 산출. - 상장지수증권의 환매기준가로 활용. - 한국예탁결제원 산출.
15) 실시간 지표가치 (iIV: Intraday Indicative Value)	<p>실시간지표가치(iIV) = 지표가치($IV(T-1)$) * (실시간 기초지수(T)/기초지수 종가($T-1$))</p> <p>*지표가치($IV(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실시간기초지수(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산출된 기초지수 값 *기초지수 종가($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지수거래소 영업일의 기초지수 종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N 1증권당 장중 실질가치.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 장중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지수 산출주기와 동일하게 하되 최대 15초 이내로 설정. - 장중 매매시 시장가격의 프리미엄/디스카운트 판단 기준으로 활용. - 코스콤 산출. - 기초지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기초지수인 코스닥 150 지수(으)로 산출됩니다. ● 이 기초지수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지분증권의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된 지수로 한국시간 기준 09:00:30~15:30:00 동안 실시간 산출됩니다. ● 따라서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실시간 기초지수가 iIV에 반영되어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 지표가치 값이 연동됩니다.</p>
16) 괴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증권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t{괴리율}(\%) = (\text{시장가격} - \text{지표가치}) / \text{지표가치} \times 100$
17) 분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산에 포함되어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등의 배당수익을 증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금액. - 지금 방식에 따라 ETF방식, 주식방식, 총수익(재투자) 방식 존재. - 자세한 내용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 권리의 내용 - (4) 분배금 결제방법 과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장참가자 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발행사	ETN 발행 주체
유동성공급자(LP)	시장에서 호가제공 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 역할 수행

일반사무관리회사	발행사를 대신하여 ETN 사무처리 업무수행.(IV계산, ETN 환매 정산 금액 산출)
지수산출기관	ETN상품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
iIV산출기관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하여 제공되는 iIV를 산출하는 기관
투자자	ETN 매매(개인 및 법인투자자)

(3)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목	내용	
증권의 종류	신한금융투자 신한 코스닥 150 상장지수증권 제62호	
기초지수 종류	코스닥 150 지수	
모집(매출)총액	20,000,000,000원(예정)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 수량	2,000,000주	
청약일(기간)	2021년 10월 14일	
납입일	2021년 10월 14일	
발행일	2021년 10월 14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최종거래일 및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2026년 09월 10일(목) (예정)	
만기일	2026년 09월 14일(월) (예정)	
지급일	2026년 09월 16일(수) (예정)	
만기시, 중도상환 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환헤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	지급여부	지급.
	지급방식	지표가치 미반영.
	분배금지급 기준일	매년 3, 6, 9, 12월의 마지막 영업일.
	분배금지급일	매 1, 4, 7, 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기타 유의사항	<p>①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 정이율)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함. 단,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이 지급일이 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관하여는 추가적으로 이자 및 기타 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p> <p>② 만기 가격결정일이 그 초일로부터 소급하여 15일 이전에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에 해당하는 만기 가격결정일을 그 이전의 매매거래일로 순차적으로 앞당긴다.</p> <p>③ 중도상환 가격결정일 및 만기 가격결정일에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하거나 위 ②</p>	

항목	내용
	<p>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인하여 만기 가격 산정이 불능한 경우 해당하는 각각의 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매거래일로 순연한다.</p> <p>④ 최종거래일은 만기 가격결정일로 조정하고, 조정된 최종거래일(T일)을 기준으로 만기 일은 T+2거래일, 지급일은 T+4거래일로 조정한다. 이러한 지급의 연기에 따른 연체이자 적용은 하지 아니한다.</p> <p>⑤ 만기 가격결정일 지연사유가 연속된 8예정거래일 이상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시장에 따른 조기상환 및 권리내용의 조정에 관한 내용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음</p> <p>⑥ 증권의 상장 관련 상장거래소 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예정일: 2021년 10월 21일 상장예비심사결과: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신규상장 신청 후 심사 항목(공모, 발행규모 요건)을 제외하고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은 금번 공모 완료 후 상기요건을 충족 하여야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게 되며,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2(상장예비심사) 제4항에 의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4)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II.증권의 권리내용 2.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배정 절차

항 목	내 용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이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청약 및 배정에 대한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청약증거금	청약금액(발행가액X청약수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	최저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는 2,000,000증권으로 합니다.				
청약기간	<table border="1"><tr><td>청약시작일</td><td>2021년 10월 14일</td></tr><tr><td>청약종료일</td><td>2021년 10월 14일</td></tr></table>	청약시작일	2021년 10월 14일	청약종료일	2021년 10월 14일
청약시작일	2021년 10월 14일				
청약종료일	2021년 10월 14일				
배 정 일	2021년 10월 14일				
납 입 일	2021년 10월 14일				
환 불 일	2021년 10월 14일				
납 입 장 소	(주)신한은행 여의도중앙 기업금융센터				
기 타 사 항	<p>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현금청약, 대체청약 및 자금과 대체청약이 가능하며 무자격청약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p> <p>② 청약한도 초과의 경우 청약한도까지만 청약한 것으로 인정합니다.</p> <p>③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액으로 대체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며, 초과청약금에 대한 반환은 납입일에 청약계좌로 자동반환됩니다</p> <p>④ 납입일은 청약금 총액이 본 증권 발행인으로 인계되는 날을 의미하며, 납입일로부터 본 증권의 권리가 발생합니다.</p>				

(2)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3)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①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항목	내용
상장거래소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예정일	2021년 10월 14일

② 상장예비심사 결과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신규상장 신청 후 심사 항목(공모, 발행규모 요건)을 제외하고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은 금번 공모 완료 후 상기요건을 충족 하여야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게 되며,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2(상장예비심사) 제4항에 의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의 신규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의 제2항(신규상장)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 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영업용순자본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순자본비율

	<p>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p> <p>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p>
기초자산	<p>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p> <p>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제113조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p> <p>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p> <p>(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p> <p>(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종목) 이상일 것</p> <p>(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p> <p>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p> <p>(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p> <p>(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p> <p>(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p>
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 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발행한도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p> <p>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p>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지수 등 이용계약	<p>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p> <p>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그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p>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4)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① 본 증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본 증권의 본질가는 기초지수의 가격,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본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므로, 본 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요인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 이전의 매매방법

본 증권이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경우, 상장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지속적인 장내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자는 본 증권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0조의 2(유동성공급회원)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공

급자를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상장되기 이전까지 전액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히,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전량 취득 후 상장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본 증권의 전량 혹은 상당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며, 본 증권이 상장된 이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정규시장(09:00~15:30) 및 시간외시장(08:30~09:00, 15:40~18:00)을 통해 본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본 증권의 (최초)매각가격은 상장일 전일 지표가치(IV)에 근거하여 결정하여 제시하게 되며, 이는 본 증권의 발행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최우선 매도호가)와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최우선 매수호가)간 차이를 그 매수호가로 나눈 값]이 1.0%이내로 유지되도록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면제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1조의5에 의하여 발생하며, 해당 사유 발생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중도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조건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중도상환청구 절차가 존재합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어 본 증권의 보유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며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권리내용의 변경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유동성공급자의 의무 및 공급계획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149조의 3(신규상장)에 따른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발행인인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본 증권에 대하여 해당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에 대한 이러한 유동성공급 기능은 주식연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헛지거래를 수행하는 부서내의 담당자(Trader 1명, System담당 1명, M/O 1명)를 지정하여 수행합니다.

유동성공급자는 해당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의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뿐만아니라 해당증권의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벗어나 괴리가 발생할 시,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하여 가격 괴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매도, 매수주문의 가격 차이가 크게 확대될 경우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신한금융투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절의2(유동성공급호가)에 따라 유동성 공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증권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적절한 스프레드비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할 것이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재한 최대호가스프레드비율(1.0%)을 초과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매수호가별로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이상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서 호가스프레드비율이란 유동성공급자 및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의 "(최우선매도호가 -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수호가*100(%)"를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신한금융투자는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을 위한 수동주문 및 자동주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장모니터링 및 해지주문 시스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유동성공급시스템은 유동성공급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신한금융투자는 자체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용 조직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한투자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내역을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 언제든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내역을 공시할 것입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신한금융투자는 해지자산/LP전용계좌 구분 관리, 만기/조기 상환 시 불공정거래 막매 방지, ETN발행대금의 해지자산 운용 외 용도제한, ETN의 기초자산과 해지자산간 불일치 최소화, 해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및 이를 위한 내부 승인 절차, 해지거래의 시장충격 완화, 발행사가 백투백 해지 또는 제 3자 유동성공급자 이용 시, 운용지침 마련 여부 등 해지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해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 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1.0%)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산기관

본 증권의 가치산출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계산기관"이라 함)은 발행인과 일반사무 관리 계약을 맺은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계산기관 명칭 : 한국예탁결제원

계산기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② 지급대리인 및 수탁대리인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만기지급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주)신한은행 여의도중앙 기업금융센터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송빌딩 17층

③ 유동성공급자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할 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배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동성공급자 명칭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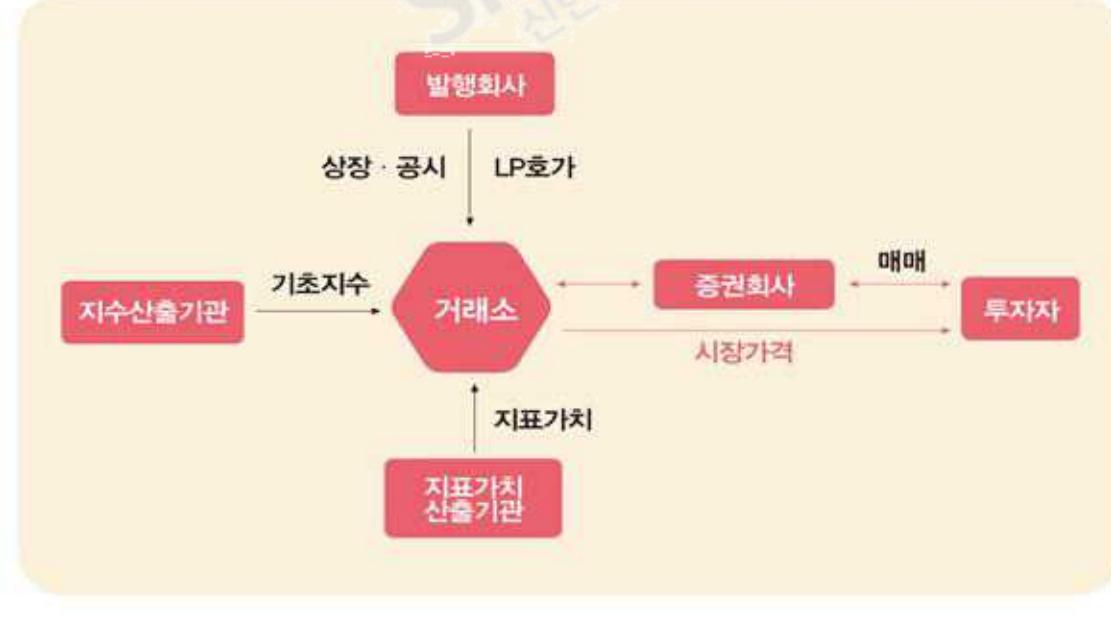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ETN상품에 관한 사항

(1) 상품개요

항목	내용
증권명	신한금융투자 신한 코스닥 150 상장지수증권 제62호
기초지수명	코스닥 150 지수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 '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본 ETN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지분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산출하여 발표하는 "코스닥 15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전략	본 ETN의 기초지수인 코스닥 150 지수는 코스닥시장 내 선정된 150 종목을 유동시가총액 기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지수입니다. 코스닥 150 지수의 일간수익률을 1배수로 추적하는 상품으로 지수구성종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본 상품의 가격은 상승, 지수구성종목의 가격이 하락하면 본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구성종목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 위험 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본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하여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인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하는 지분증권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 '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ETN시장 구조



시장구조

ETN은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발행회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 시장으로, 개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경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유동성공급자에 의해 호가가 제공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높습니다.

(3) 시장참가자 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발행사	ETN 발행 주체
유동성공급자(LP)	시장에서 호가제공 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 역할 수행
일반사무관리회사	발행사를 대신하여 ETN 사무처리 업무수행.(IV계산, ETN 환매 정산 금액 산출)
지수산출기관	ETN상품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
iIV산출기관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하여 제공되는 iIV를 산출하는 기관
투자자	ETN 매매(개인 및 법인투자자)

2. 예상손익구조

(1) 제비용

구분	내용	연간비율(%)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사보수 발행 관련 비용(상장예비심사수수료, 상장수수료, 예탁수수료, 증권발행등록수수료, 발행 분담금 등) 포함	0.12
	라이센스 기초지수 라이센스 비용	0.03
	위탁사무보수 한국예탁결제원	0.04
	기타비용 해지거래 관련 유관 기관 수수료 및 거래비용,	0.09
소계	-	0.28
기초지수 반영 비용	-	-
	-	-
소계	-	-

합계	-	0.28
----	---	------

(2) 예상손익구조

총보수(%)	일수	투자원금	기초지수	가격승수
0.28	365	100만원	100.00	1

* 해당 상품은 지표가치(IV, 기초지수 수익률에서 보수 등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투자자에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제비용, 세금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및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에 대한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일별로 본 증권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상품이 해당 날짜에 발행되어 만기까지 투자하였을 경우 얻는 투자수익률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승후 하락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만원)	누적 제비용(만원)	기말지표가치(만원)
0	100	-	0	0	100
1	105	5.00%	0.29	0.29	104.71
2	115	9.52%	0.32	0.62	114.38
3	107	-6.96%	0.30	0.92	106.08
4	99	-7.48%	0.28	1.19	97.81
5	94	-5.05%	0.26	1.46	92.54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6.00%
	연률화	-1.23%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7.46%
	연률화	-1.54%

② 하락후 상승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만원)	누적 제비용(만원)	기말지표가치(만원)
----	------	----------	------------	------------	------------

0	100	-	0	0	100
1	97	-3.00%	0.27	0.27	96.73
2	90	-7.22%	0.25	0.52	89.48
3	80	-11.11%	0.22	0.75	79.25
4	95	18.75%	0.27	1.01	93.99
만기	102	7.37%	0.29	1.30	100.7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00%
	연률화	0.4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0.70%
	연률화	0.14%

③ 지속상승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만원)	누적 제비용(만원)	기말지표가치(만원)
0	100	-	0	0	100
1	103	3.00%	0.29	0.29	102.71
2	108	4.85%	0.30	0.59	107.41
3	112	3.70%	0.31	0.90	111.10
4	120	7.14%	0.34	1.24	118.76
만기	121	0.83%	0.34	1.58	119.42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1.00%
	연률화	3.89%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19.42%
	연률화	3.61%

④ 지속하락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만원)	누적 제비용(만원)	기말지표가치(만원)
0	100	-	0	0	100
1	95	-5.00%	0.27	0.27	94.73
2	88	-7.37%	0.25	0.51	87.49
3	87	-1.14%	0.24	0.76	86.24
4	80	-8.05%	0.22	0.98	79.02
만기	78	-2.50%	0.22	1.20	76.8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2.00%
	연률화	-4.85%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3.20%
	연률화	-5.14%

3. 권리의 내용

(1) 본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본 증권은 기초지수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구조이므로 본 증권의 보유자는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만기 및 종도상환 지급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증권 보유자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청구 절차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도 만기일에 자동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하며,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본 증권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 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2) 만기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 ① 본 증권의 1증권당 만기시 지급액은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②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합니다.
- ③ 발행인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의된 만기지급액 평가산식에 의하여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을 산출하고, 아래의 지급대리인과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본 증권의 지급 사무를 의뢰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기지급액 (세전)=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지표가치 × 보유증권 수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주)신한은행 여의도중앙 기업금융센터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송빌딩 17층

④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지급이 완료됩니다.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②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평가가격의 98%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일자별 프로세스

	T일	T+1일(의무)	T+3~5일	T+4~14일
		T+2~9일(시장교란 시)	T+4~13일(시장교란시)	
구분	중도상환 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
투자자	중도상환신청 (처분제한조치)	-	중도상환 대금 수령	-
발행사	중도상환 내역확인/ 승인	평가(당일 종가로 산출 되는 IV적용) or 연기(시장교란 시)	변경상장 신청	-
예탁원	신청내역취합 발행사 통지	상환대금 산출	증권 소각 거래소에 중도상환내역 통보	-
거래소	-	-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 중도상환 세부 내용

구분	해당사항
중도 상환	신청방법
	신청가능일
	신청불가능일
	신청단위
	신청철회
	결정일(평가일)
	지급일
	가격결정방법
	수수료

	투자자유의사항	<p>중도상환신청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중도상환신청일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상장거래소영업일이 중도상환 신청일이 되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 결정일은 순연된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의 상장거래소 익 영업일이 됩니다.</p> <p>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에 거래소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의 사유로 기초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하는 가격 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매 거래일로 순연합니다.</p> <p>발행인은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해지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가격결정 요인 등을 검토하여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고 선의로 판단한 경우 중도상환요청을 취소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p> <p>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동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행인이 판단하고, 본 증권의 위험회피거래(해지거래)의 유동성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은 본 증권의 중도상환처리주기를 단축하거나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능기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본 증권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p>
만기 상환	결정일	2026년 09월 10일(T)
	지급일	만기일 : 2026년 09월 14일(T+2) 만기 지급일 : 2026년 09월 16일(T+4)
	가격결정방법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의 상장거래소 익 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증권당 지표가치 * 보유수량)

(4) 분배금 결제방법과 절차

- 본 ETN 상품의 경우 분배금 지급(지표가치 미반영) 상품으로 구분의 시장가격지수 - ② 주식방식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① ETF방식 : 지표가치에 예상배당금 반영	
	분배금 지급기준일	ETF와 동일하게 설정 Ex) 국내외주식형 : 1,4,7,10월 마지막 영업일 채권형 : 12월 마지막 영업일 or 이자발생시기 상품형/혼합형 등 : 12월 마지막 영업일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지급 (주식형, 채권형)	시장가격 지수	분배금지급일	분배금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10영업일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 락조치 실시		
		② 주식방식 : 지표가치에 배당금 미반영 *국내주식형 ETN만 적용가능			
		분배금 지급기준일	매 3,6,9,12월의 마지막 영업일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분배금지급일	매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없는 락조치 실시		
		분배금 지급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은 지수에 재투자) *투자자는 ETN 매도시 분배금 실현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일			
		분배락조치			
		미지급(commodity형, 선물형) 배당금, 채권이자 등 분배할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 유형.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조정 및 계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의 변경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증권의 어떠한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의 조기상환 또는 권리내용의 변경에 열거하지 못하거나 유가증권시장 해당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조기상환 사유

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7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 등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의 '[\(2\) 조기상환 방법](#)'에 따라 보유자에게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조기상환일은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만, 사유발생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합니다.

구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20.7.22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준)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p>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p> <p>가.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p> <p>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총 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p>
상장법인 부적격	<p>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p> <p>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p> <p>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p> <p>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p> <p>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p> <p>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p> <p>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p> <p>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p> <p>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p>
기초자산 부적격	<p>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p> <p>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지수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p>
만기상환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p> <p>나. 상장지수증권이 종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p> <p>다. 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p> <p>라. 아래와 같은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장종료시점 iIV 기준 과리율이 +100% 이상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라목의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p>
유동성공급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p> <p>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어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p> <p>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p>
	<p>다음 제149조의6 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제149조의6 (관리종목지정)</p> <p>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p> <p>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p> <p>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p> <p>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p>

②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일 이전이라도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 발생사실,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상환일은 발행인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써 발행인이 조기상환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

합니다.

- ⑦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되거나, 발행인에게 본 증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 기초자산 또는 기초지수의 가격이 폐지, 단절되는 경우
- ㉣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 기초자산이나 기초지수의 장종 또는 장마감 가격이 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2) 조기상환 방법

- ①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지급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발행인은 지정된 조기상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② 본 증권에 대하여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복수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상환가격결정일의 지표가치(V)에 따라 조기상환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

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자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www.shinhanetn.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의 변경사유

① 기초자산의 가격이 폐지, 단절되는 경우 :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에서 기초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며 발행인은 '**(2) 조기상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증권 보유자에게 만기전에 상환하게 됩니다.

②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결정일(종도/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초자산가격,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기초자산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 거래소, 관련거래소,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이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i)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 · 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ii)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 한국거래

소에서의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 거래 또는 관련거래소, 한국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거래소, 관련거래소,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이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사실이 실제 폐장시간 또는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③ 발행회사가 본 증권에 대하여 시장교란사유 등 발생으로 기초자산의 가격확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거래소, 관련거래소,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산출은 지수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및 발표의 정정,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수산출기관이 정함을 따릅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수산출기관의 기초지수 산출,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수산출기관이 기초지수와 관련된 권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상관례에 따라 결정한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되었으나 추후 정정발표 등으로 발행회사가 정확한 기초지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지수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기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 대리인으로서 해당 사유 발생 전후에 본 증권의 가격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병합 · 분할 발행 원본액” 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5제3항에 따라 본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액면분할 및 병합 사유 등으로 인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단수주의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이나 처리방식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⑥ 아래 규정을 포함한 본 증권의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해 한국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권리를 변경할 경우, 본 신고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 ·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 변경기준(※20.7.23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9제2호의3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장지수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과 만기일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한다.

가. 최종거래일 : 상장폐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만기일 : 가목에 따라 변경된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2.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변경한다. 이 경우 최종거래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만기일을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가.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이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후 매매거래일

다. 그 밖에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방법이나 상장법인이 거래소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한다.

⑦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⑧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확인이 필요한 날(만기 가격결정일, 종도상환 가격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하여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 증권의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각각의 가격결정일 및 지급일 등의 권리내용을 재지정할 수 있으며 아래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i) 각각의 가격결정일에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하거나 위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인하여 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 가격 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매 거래일로 순연한다.

ii) 최종거래일은 만기 가격결정일로 조정하고, 조정된 최종거래일(T일)을 기준으로 만기일은 T+2거래일, 지급일은 T+4거래일로 조정한다. 이러한 지급의 연기에 따른 연 이자 적용은 하지 아니한다.

나.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자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단, 본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를 포함)에 통보합니다.

- 발행인이 위와 같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경우, 발행인은 변경 및 결정된 본 증권의 조건을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www.shinhanetn.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한국거래소(www.krx.co.kr)를 통하여 공시를 할 것이며, 변경 및 결정된 조건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① 본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소정의 관리절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장 소정의

정산 및 파산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② 본 증권에 대하여 이러한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나 파산법,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인이 관계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 준거법과 재판관할

- ①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에 관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 ②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 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매도 시 음의 괴리를, 투자시점 대비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의 기초지수 보합 또는 상승 시에도 누적된 총보수 등에 따른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괴리를 위험	본 증권의 경우 초가발행 제한/발행 재개, 발행회사 신용상태, LP호가 스프레드 확대/유동성공급 제한, 가격제한폭/시차 등으로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혹은 유동성 호가제출 면제 시간대에 일반 투자자들 간의 거래로 인해 본 ETN증권의 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할증될 위험이 있습니다 . 또한 ETN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단기간 내에 급등락 할 경우, 기초지수의 산출 주기로 인해 ETN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할인/할증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 등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 오류 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본 증권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의 고의, 중과실, 사기로 인하여 본 증권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기초지수인 코스닥 150 지수(으)로 산출됩니다.● 이 기초지수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지분증권의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된 지수로 한국시간 기준 09:00:30~15:30:00 동안 실시간 산출됩니다.● 따라서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실시간 기초지수가 iiV에 반영되어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 지표가치 값이 연동됩니다.

지표가치 및 실시간 지표가치와 유동성 호가 과리 위험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 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1.0%)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충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해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해지거래에 의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 가격결정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위험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 으로서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 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해도 본 증권의 발행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발행회사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p>신용위험</p> <p>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p> <p>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자기자본의 50/100으로 ETN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 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있습니다.</p> <p>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21년 08월 17일자로 제출한 제23기 반기보고서(2021년 01월 01일~2021년 06월 30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결제지연 위험</p> <p>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된 해당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체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함)</p>

3. 상장관련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상장폐지 위험</p> <p>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상장폐지)에 따른 ETN 상장폐지로 발행 조건(최종거래일, 만기 상환가격 결정일 등)의 변경, 평가 손실의 확정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p> <p>상세한 내용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가격제한폭 위험</p> <p>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해, 기초지수가 이를 초과하여 변동하더라도 ETN 가격은 ±30% 이내에서 변동합니다.(레버리지는 ±60% 내에서만 변동합니다)</p>	
<p>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본 증권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본 증권이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p> <p>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선물 가격 등의 변동은 실시간 지표가치 및 지표가치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본 증권의 가치는 계속 변동할 수 있습니다.</p> <p>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4 한국거래소 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p>	

	<p>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p> <p>이상과 같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p>
거래정지/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위험	<p>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p> <p>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p> <p>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p> <p>투자유의종목 관련 규정(※20.7.23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초자산(국내물) 6% 이상, 해외기초자산(해외물) 12%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가, 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국내물 3% 해외물6% 이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가, 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리율 추가 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자동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의종목 지정단위기간이 종료되는날 괴리율이 관리범위 3배(국내물 9% 해외물 18%) 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대용증권에서 제외 및 위탁증거금 100% 적용

--	--

4. 중도상환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환청구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하는 날(T)과 상환대금을 결정하는 기준 가격 적용일(T+1)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시 상환청구일로부터 상환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상장지수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 위험	만기 전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조기에 상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기상환 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사유는 '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상품내용에 관한 사항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험	ETN 기초지수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구성종목/비율의 대규모 변경으로 당초의 투자목적과 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누적수익률 괴리 위험	ETN의 경우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상품이나, 발행사 보수, 기타 수수료, 헤지비용 등 각종 제반비용으로 인해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전략으로 인한 위험	본 상품은 코스닥시장 내 선정된 150종목에 대해 유동시가총액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합니다. 150종목에 대한 분산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이 급격한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수익률 하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구성종목 정보공시	당사는 발행사로서 매일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비중을 일부 공시하고 있으나 전

오류 위험	산상의 문제 등으로 정보에 지연이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기관 및 관련 규정 위험	<p>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들 기관은 비상상황 발생 시 투기적인 포지션 제한에 대한 소급적용, 증거금 인상, 일일가격 변동제한 및 거래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관련 규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운용전략이나 성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이러한 규제 변경은 미리 예측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당 증권에 상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p>

6. 조기청산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청산 위험	<p>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3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청산 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장종료시점 iIV 기준 고리율이 +100% 이상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p> <p>*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상환가격을 "Max [사유발생일의 지표가치, 직전 3매매일(사유발생일 포함)의 지표가치(종가 기준) 평균]"로 정하고 있음. 다만, "투자설명서에 달리 정하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 시 변경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본 증권의 경우 조기청산 사유 발생 시 상환가격은 투자설명서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p> <p>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p> <p>본 증권이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수 있</p>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	---

7. 기타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금성 위험	<p>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의 매매, 혹은 중도상환 요청을 통해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이 1.0%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 공급의무 해태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세제,법률상 위험	<p>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내주식 가격의 상승분은 비과세 대상이며 분배금에 대한 과세(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투자가 법인 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당해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 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p>
유동성 공급 실무 위험	<p>본 증권의 유동성 공급자인 신한금융투자는 유동성 공급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나, 유동성공급 시스템의 부득이한 오류로 인해 유동성공급 업무 수행상 오류가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금융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p>

과세 위험	<p><u>득 등)이 금융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u></p> <p>한편, 투자가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u>본 증권의 매매를 통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종합소득과세시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u> 예를 들어, 본 증권의 매매 수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고, 손실액이 2천만원이더라도(실제 투자자에게 발생한 수익은 0원),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 금액 2천만원에 대해 종합과세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021년 현재)</p>
LP보유량 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	<p>발행사가 사실상 단일 LP가 되고 신규상장 시 100% 보유 상태에서 배출되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ELW와 같이 LP보유량을 매일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지수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된 150종목을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 기초지수 소개

1. 지수명칭 : 코스닥 150 지수

2. 지수개요 :

KOSDAQ 150 지수는 KRX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서 2015년 7월에 개발되었으며, 선물,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지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코스닥시장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종목 선정, 지수산출 등 세부 방법론을 설계하였습니다.

※ 포트폴리오 조정 :

KOSDAQ 150 지수는 구성종목 선정방법에 따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구성종목을 변경하며, 정기변경일은 KOSPI 200 선물시장 6월, 12월 결제월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입니다. 구성종목은 주가지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및 11월중에 확정하여 그 결과를 KRX 홈페이지(<http://index.krx.co.kr>)를 통해 공표합니다.

※ 수시변경 및 처리방식 :

KOSDAQ 150 지수의 구성종목은 수시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 기준에 따라 구성종목에서 제외하며, 해당종목이 속한 산업군 예비종목 1순위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새로 편입합니다. 다만, 수시변경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15매매거래일 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정지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수시변경일로 합니다. 이용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종목의 변경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수시변경일이 다

음 정기변경일 전 1개월 이내인 경우 예비종목을 편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RX 홈페이지(<http://index.krx.co.kr>)의 지수방법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시점 : 2010년 01월 04일

4. 기준지수 : 1,000pt

5. 산출시간 : (한국시간) 09:00:30~15:30:00

※ 기초지수 산출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09:00:30~15:30:00 동안 실시간으로 산출되며 지수 증가는 15:30:00 이후에 발표됩니다. 따라서 09시부터 15시 30분까지 기초지수가 실시간으로 IIIV에 반영됩니다.

6. 지수방법

9. 주가지수의 산출

9.1 구성종목 가중치(Weighting Scheme)

- 주가지수는 기본적으로 구성종목의 개별 시가총액으로 가중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동일가중지수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수는 시가총액이 아닌 다른 팩터로 가중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9.2 지수 산출산식(Index Calculation)

- 9.2.1 주가지수는 비교시점의 시가총액(비교시가총액)을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가총액)으로 나눈 후 기준지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text{지수} = \frac{\text{비교시점의 시가총액}}{\text{기준시점의 시가총액}} \times \text{기준지수}$$

- 9.2.2 비교시가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수반영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사용되며, 권리락 또는 배당락을 수반하는 유·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권리락 조치일 또는 배당락 조치일에 발생하는 주식을 상장주식수에 더하여 산출합니다.

- 9.2.3 한편, 유·무상 감자, 기업분할 등 평가가격에 의하여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종목의 경우는 매매거래재개일에 비교시가총액 계산 시 매매거래 정지 직전의 시가총액을 사용합니다.

- 9.2.4 다른 지수사업자 등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산출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시가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9.2.5 주식수의 변경, 구성종목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지수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준시가총액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수정합니다.

$$\text{신기준 시가총액} = \frac{\text{변동전일의 비교시가총액} + \text{비교시가총액의 변동액}}{\text{변동전일의 비교시가총액}} \times \text{구기준 시가총액}$$

코스닥 150 지수 산출 방법1

9.2.6 기준시가총액의 수정사유별 수정시기 및 수정방법은 기업이 벤트 적용 방법론을 따릅니다.

- 「기업이 벤트 적용 방법론」 참고

9.2.7 해외 지수사업자 등과 파트너쉽을 통해 산출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비교시가총액 산정 등에 있어 해당 사업자가 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9.3 지수의 표시 및 산출시간

9.3.1 지수의 표시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또한 지수의 표시단위는 포인트로 합니다.

9.3.2 지수는 증권시장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개시(장개시) 10초 후부터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종료(장종료)시까지 산출합니다. 다만, 해외 지수사업자 등과 파트너쉽을 통해 산출하는 지수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방법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9.3.3 장종료시에 구성종목의 종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종가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지수 산출시간을 연장합니다.

9.3.4 증권시장의 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 거래 재개 시까지 지수 산출을 정지 또는 중단합니다.

9.3.5 지수는 일반적으로 1초, 2초 또는 10초 주기로 산출하며, 목적에 따라 산출주기를 달리하거나 일별 종가지수만 산출할 수 있습니다.

9.3.6 KRX 매매체결시스템에서 산출된 개별종목 가격에 기초하여 KRX 정보 분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지수를 산출합니다.

9.4 비상 시 지수산출

- 매매체결시스템 또는 지수통계시스템의 장애, 천재·지변, 인위재난 등

코스닥 150 지수 산출 방법2

으로 지수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KRX 지수의 산출중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합니다.

- 「KRX 인덱스의 산출중단 가이드라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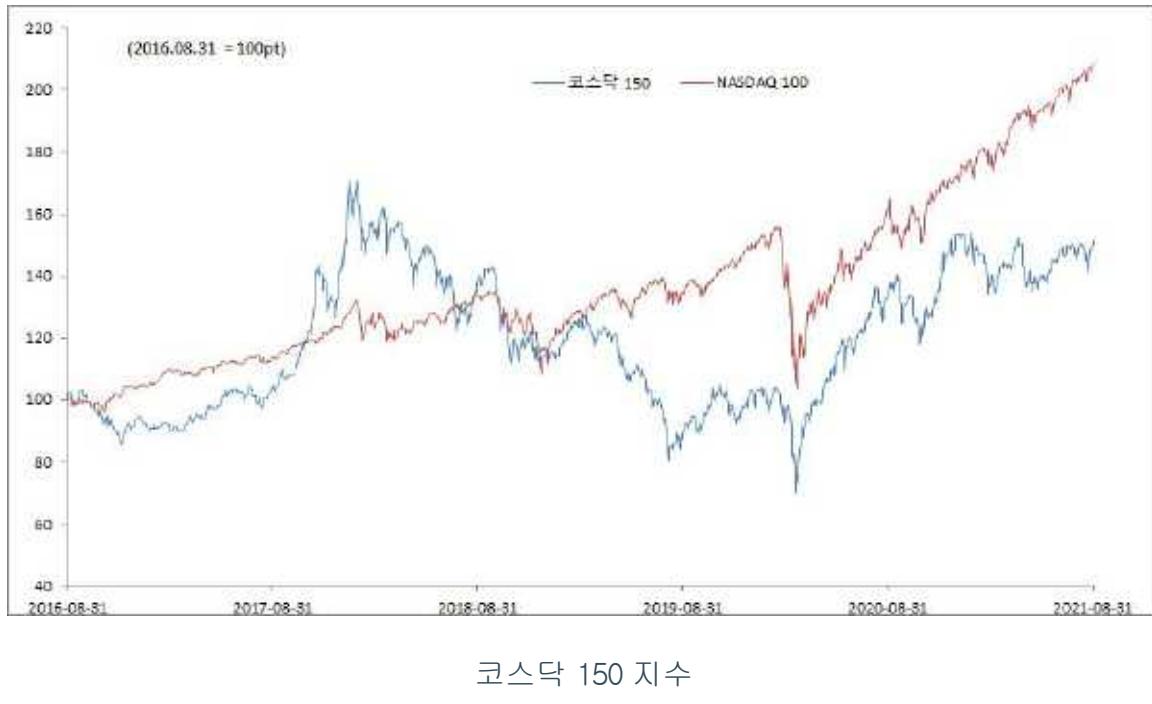
9.5 지수오류 시 정정

- 지수산출의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오류발생시 지수 정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합니다.
- 「KRX 인덱스에 관한 오류정정 가이드라인」 참고

코스닥 150 지수 산출 방법3

(2) 기초지수 수익률(%, '21.08.31 기준)

기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연초이후
수익률	해당기간	8.03	10.93	13.10	9.85	51.52	-0.99
	연평균	32.14	21.85	13.10	3.28	10.30	-1.50
변동성	해당기간	16.37	18.09	22.86	29.02	27.30	20.58



2. 기초지수 구성종목 및 거래소

(1) 기초지수 구성종목 및 거래시장 개요

본 증권의 기초지수인 코스닥 150 지수는 코스닥시장 내 상장된 전체 종목에서 선정된 150 종목을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지수입니다.

가. 상위 10개 구성종목 현황 (2021년 8월 31일 기준)

No	종목명	지수시가총액비중(%)
1	셀트리온헬스케어	9.81
2	에이치엘비	4.27
3	에코프로비엠	2.66
4	펄어비스	2.42
5	카카오게임즈	2.40
6	셀트리온제약	2.35
7	알테오젠	2.10

8	씨젠	1.90
9	엘앤에프	1.78
10	리노공업	1.46

3.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가. 기초자산이 상장되어 있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및 <http://index.krx.co.kr>)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1) 해당 지수의 산출기관은 당해 증권의 손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2) 당해 지수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지수 산출기관에 일임합니다. 해당지수의 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의 책임이므로 발행인은 지수의 정지, 단절, 폐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V.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발행인의 직접모집으로 발행되므로 인수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대한 분석 및 가격결정 등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One
Shinhan
신한금융투자

VI.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총보수

(1) 자금조달의개요

(단위 : 원)

항목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예정)(1)	20,000,000,000
발행제비용(2)	7,333,300
순수입금[(1) - (2)]	19,992,666,700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 총보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000,000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1항제3호
예탁원수수료	4,000,000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한 ETN 수수료 약정서에 의함
상장수수료	333,300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예비심사수수료	2,000,000	유가증권상장규정
합계	7,333,300	-

*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과 관련된 일부 비용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공모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장외옵션매입계약 혹은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같이 위험회피거래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행인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될 것입니다.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7년	건	724	891	1615	0	0	0	182	277	459	0	1	1
	금액	4,854,738	1,459,225	6,313,963	0	0	0	677,799	963,457	1,641,256	0	30,000	30,000
2018년	건	838	717	1555	24	33	57	148	94	242	1	11	12
	금액	4,745,835	936,694	5,682,529	49,372	53,287	102,659	673,485	409,904	1,083,389	580	109,322	109,902
2019년	건	946	554	1500	99	52	151	200	123	323	4	59	63
	금액	5,304,650	892,052	6,196,702	495,699	81,452	577,151	684,175	860,985	1,545,160	6,046	559,772	565,818
2020년	건	824	592	1416	561	404	965	51	123	174	16	46	62
	금액	3,597,501	773,764	4,371,265	2,760,458	459,416	3,219,874	120,176	466,187	586,363	32,085	213,164	245,249
합계	건	3332	2754	6086	684	489	1173	581	617	1198	21	117	138
	금액	18,502,724	4,061,735	22,564,459	3,305,529	594,155	3,899,684	2,155,635	2,700,533	4,856,168	38,711	912,258	950,969

나. 파생결합사채(ELB, DLB)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7년	건	134	42	176	1	3	4	10	105	115	0	1	1
	금액	1,094,674	166,012	1,260,686	586	4,199	4,785	20,291	662,728	683,019	0	30,000	30,000
2018년	건	141	15	156	1	0	1	30	44	74	0	0	0
	금액	1,428,807	13,632	1,442,439	111	0	111	183,586	192,951	376,537	0	0	0
	건	120	6	126	19	4	23	60	19	79	1	8	9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9년	금액	1,897,583	4,071	1,901,654	226,972	2,559	229,531	225,291	303,112	528,403	428	82,751	83,179
2020년	건	113	0	113	102	0	102	80	25	105	27	24	51
	금액	2,248,004	0	2,248,004	1,684,851	0	1,684,851	477,539	608,876	1,086,415	165,661	595,876	761,537
합계	건	508	63	571	123	7	130	180	193	373	28	33	61
	금액	6,669,068	183,715	6,852,783	1,912,520	6,758	1,919,278	906,707	1,767,667	2,674,374	166,089	708,627	874,716

다.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ELW, ETN)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ELW						ETN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7년	건	354	0	354	0	0	0	9	0	9	5	0	5
	금액	1,058,287	0	1,058,287	0	0	0	427,000	0	427,000	300,000	0	300,000
2018년	건	0	0	0	0	0	0	8	0	8	7	0	7
	금액	0	0	0	0	0	0	530,000	0	530,000	430,000	0	430,000
2019년	건	1	0	1	0	0	0	13	0	13	13	0	13
	금액	1,020	0	1,020	0	0	0	740,000	0	740,000	300,000	0	300,000
2020년	건	44	0	44	34	0	34	24	0	24	21	0	21
	금액	45,556	0	45,556	35,449	0	35,449	7,460,000	0	7,460,000	6,780,000	0	6,780,000
합계	건	399	0	399	34	0	34	54	0	54	46	0	46
	금액	1,104,863	0	1,104,863	35,449	0	35,449	9,157,000	0	9,157,000	7,810,000	0	7,810,000

라. 거래상대방별 신용환산액에 관한 사항 (2020년 09월 29일 기준)

거래상대방별 신용환산액 중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상대방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합산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자기자본 금액은 2020년 09월 29일 기준)

(단위: 원)

거래상대방	신용환산액
기타	1,509,772,913,791
합계	1,509,772,913,791

주1)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주2) 대체비용 :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의 시가 평가한 현재의 대체비용

주3) 신용환산율 : 거래의 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라 증권업감독규정 <별표 13>에 의해 결정

ex) 명목금액이 100억원인 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A회사와 동일한 조건의 ELS계약을 체결한 경우 A회사의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
 -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시가평가 95억원) + (명목금액 100억원 × 신용환산율 8%) = 103억원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

(1) ETN세제 현황

① 증권거래세 : 비과세 【증권거래세법】

②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Min(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매매 차익	환매 (중도, 만기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장내매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2항】	배당소득세 과세 - Min(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매도가-매수가±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

- 산출주기 : 매 영업일 국내 장종료후 1회 산정.

- 산출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과세표준 계산 방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 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접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접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접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 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 · 수수료 등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 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개인, 외국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ETF와 동일)	내국법인* (ETF와 상이)	외국법인** (ETF와 동일)
원천징수여부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3조】

* ETF의 경우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3)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및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공시제도

(1) 정기공시

- 상품 및 발행자 관련 주요 투자지표를 신고
- (일일신고) 지표가치(M),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
 *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 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신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 수시공시

- 상품 및 발행자 신용위험 등 관련 중요사항을 자체 없이 공시
- 발행자(보증인)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정기변경, 수시변경)
- 발행자(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경우
- 기초지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 기초지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5%를 초과하는 지수구성종목의 교체가 있는 경우

-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정정의 경우
- 유동성공급계약(계획) 체결, 변경, 해지 등의 경우
- 과리율이 일정비율(국내자산:1%, 해외자산:2%)을 초과하는 경우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익금 분배의 경우(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전)
- 해당 증권의 병합 또는 분할을 위해 소유자명세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일
-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 당일

(3) 상장폐지 예고

-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공시
- 만기 1개월 전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교체기준에 해당한 경우
-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00%에 미달한 경우

(4) 해명요구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발행자에게 해명 요구 시.

4. 기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의 다른 부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본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개시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설명서 상에 사용된 금융용어 중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 QR코드를 찍으세요. 금융감독원 FINE에서 제공하는 금융용어사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용어사전QR

One
Shinhan
신한금융투자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

